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428호

나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(찬성자 23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1월 12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적용범위가 ‘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’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와 그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함(안 제3조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적용대상을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에 맞춰 “주소와 사업장” 을 두는 경우에서 “사업장” 으로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됨.

나. 조례 적용 대상의 간소화(안 제3조)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소상공인지원 조례”)를 제정(2014.10.20.)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
▶경영 및 창업지원, ▶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, ▶영세 소상공인 공제 사업 지원, ▶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<지원사업 내용>

구분	내용
경영 및 창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▶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▶공동화 또는 협업사업,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▶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▶자금·인력·기술·판로·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▶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▶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▶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
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▶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▶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▶과밀업종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
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▶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 지원

-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과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음(제3조).
-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“거주지”와 “영업장 주소”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면서 ‘코로나19 피해 지원금’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함¹⁾.
 -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‘주소 및 사업장을 둔’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.
-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을 “사업장”을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함[참고자료].
- 한편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라 제정(2021.3.5)한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에는 지원대상을 “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명시한 반면, 소상공인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이 “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존치되면서 조례 간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“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

1) 연합뉴스(2022.6.9.)_"소상공인 25만명, 사업장과 거주지 다르다고 지원 제외"

으로 통일하면서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, 소상공인 관련
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성찬	02-2180-8061

[참고자료1-감사원 공문(2020.7.15.)]

"신뢰받는 감사원, 국민과 함께 합니다."



감사원

바른감사
바른나라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-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조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제166조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6조 등 관련입니다.
2. 감사원은 '20. 3. 19. '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'을 발표하여 코로나-19 대응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'국가적 위기 극복'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.
3. 한편,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는 '20. 6. 1.부터 같은 해 6. 19.까지 소관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지자체(광역/기초)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·운영하면서
 - 지원대상 기준(관내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를 모두 두거나, 영업장 주소만 두는 경우 등)이 서로 달라 '코로나-19 피해 지원금' 지급에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
 -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등 문제점(예: 관내 영업장 주소만 두고 경제활동을 하나 사업자의 거주지가 관외라는 사유로 배제)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4. 이에 감사원은 향후 사회문제화 소지 등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, '20. 7. 10. 소상공인 지원 제도 및 지자체 조례 개선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 대책회의를 우선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·조치할 필요성을 함께 공유한 바 있습니다.
5.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·시행할 때 위 대책회의 논의사항 및 불임자료 등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: 코로나-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긴급 대책수립 참고자료(별도송부), 끝.

[참고자료2-행정안전부 공문(2020.7.24.)]



행정안전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·개정 시 고려사항 통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의 지자체 감사 실시 과정에서 각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·운영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. (붙임 문서 참조)
 - 지원대상 기준(관내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를 모두 두거나, 영업장 주소만 두는 경우 등)이 서로 달라 '코로나-19 피해지원금' 지급에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,
 -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됨

※ 예시 : A, B 두 지자체 모두 조례 상 지원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'주소 및 사업장을 둔'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A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B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A, B 지자체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
3.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·개정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, 지원대상을 지자체에 '주소 및 사업장을 둔' 소상공인으로 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지원대상을 지자체에 '사업장을 둔' 소상공인으로 하는 등 조례 제·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-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조(감사원 공문) 1부. 끝.

행정안전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법무담당관), 부산광역시(법무담당관), 대구광역시(법무담당관), 인천광역시(법무담당관), 광주광역시(법무담당관), 대전광역시(법무통계담당관), 울산광역시(법무통계담당관), 세종특별자치시(규제개혁법무담당관), 경기도지사(법무담당관), 강원도지사(교육법무과장), 충청남도지사(교육법무담당관), 충청북도지사(법무혁신담당관), 전라남도지사(법무담당관), 전라북도지사(법무행정과장), 경상남도지사(법무담당관), 경상북도지사(법무혁신담당관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특별자치법무담당관)

행정사무관 이택영 자치법규과장 ^{중립 07/24} 인병준

협조자

시행 자치법규과-1825 (2020.07.24.) 접수 법무담당관-11457 (2020.7.24.)
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(어진동) 732호 /http://www.mois.go.kr
전화 044-205-3399 /전송 044-204-8955 /elusive79@mail.go.kr /비공개(5)

[참고자료3-중소벤처기업부 공문(2020.8.20.)]

중소기업을 건강하게, 소상공인을 따뜻하게



중소벤처기업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시 고려사항 통보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감사원 대전사무소-2170(2020.7.16.)호와 관련입니다.
3.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·개정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"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"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속 기초자치단체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한편, 이와 같은 규정에서 "소상공인"을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,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서 중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은 기업체(사업자등록증의 주소)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중소벤처기업부



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(자치법규과장), 서울특별시(법무담당관), 부산광역시(법무담당관), 대구광역시(법무담당관), 인천광역시(법무담당관), 광주광역시(법무담당관), 대전광역시(법무통계담당관), 울산광역시(법무통계담당관), 세종특별자치시(규제개혁법무담당관), 경기도지사(법무담당관), 강원도지사(교육법무과장), 충청남도지사(교육법무담당관), 충청북도지사(법무혁신담당관), 경상북도지사(법무혁신담당관), 전라남도지사(법무담당관), 전라북도지사(법무행정과장), 경상남도지사(법무담당관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특별자치법무담당관)

사무관 **우창훈** 소장 **이은청**
 소상공인정책과전결 08/18

협조자

시행 소상공인정책과-1672 (2020.08.19.) 접수 법무담당관-12845 (2020.8.20.)
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(둔산동) / www.mss.go.kr
 전화 042-481-3988 /전송 042-472-6958 / wchang@korea.kr / 비공개(5)